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재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제리, 김종무,
박기열, 박순규, 송아량,
이영실, 최 선, 한기영,
황규복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23조 공가사유 중 원격지(遠隔地)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를 신설함(안 제23조제12호).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(안 제23조제13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12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원격지(遠隔地)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

1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
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원격지(遠隔地)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</p>